

2001년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65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1. 21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1. 27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12. 11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고성군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지역단위 인위적 재난에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.
- 2001년 우수기 대비 재난관리대상 시설 중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리등급 C급 이상으로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용역비 15,000천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코져 함.

3. 주요골자

기금조성

- '98 ~ 2000 총 기금조성액 : 51,524,440원
 - '98 ~ 2000 법정기금조성액 : 48,498,000원
 - '98 ~ 2000 기금 이자수입 : 3,026,440원
- 2001년 법정기금 예산액 : 16,631,000원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재난관리기금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2/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

-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동 조례 제5조에서 재난위험 시설 등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8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
- 고성군 지역단위 인위적 재난에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우수기 대비 재난관리 대상시설 중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리등급 C급이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 15,000천원을 동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기금 사용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지나
- 고성군관내 C급이상 정밀 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얼마나 되며 장기적인 재난안전관리 대응책 등을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고성군 C급이상의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얼마인지
- 답 : 재난관리대상 시설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87개소인데 그중 공공시설 48, 사유시설 39개소이며, A급 28개소, B급 41개소, C급 17개소, D급은 없으며, E급 1개소임.
- 문 :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대주택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 기금을 사용했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지 군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인지
- 답 :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군 예산에서 지급하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용자를 해주고 회수해야 할 것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0. 12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